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2. 8 선고 2021가합278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

담당변호사 윤여창, 채성지, 조준호

변 론 종 결 2022. 11. 24.

판 결 선 고 2022. 12. 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, D과 피고들 사이에 2020. 8. 27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들은 D에게 각 2/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4550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11. 2. ‘D은 원고에게 8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6. 11. 7. D에게 송달되어 2016. 11. 22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D의 부친 망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고, 2020. 8. 27. 사망하였다.

다.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 피고 B, 자녀 D, 피고 C이 있었는데 D은 2020. 11. 17.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617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1. 18.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.

라. 피고들은 2021. 3. 3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27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/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D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들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에게 사해의사도 존재한다. 따라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2/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포기하였을 뿐이고, D이 피고들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송경호, 판사 김선범, 판사 시용재

별지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파트 호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, 호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

1층 1419.77㎡

2층 ~ 15층 1361.79㎡

옥탑1층, 옥탑2층 94.88㎡

지하실 1343.0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32139.2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37.42㎡

대지권의 표시

1 소유권대지권 32139.2분의 61.30

2.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337.5㎡

3. 위 지상

[도르명주소] 서울특별시 중랑구

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

1층 88.66㎡

1층 38.48㎡

1층 21.59㎡

2층 148.73㎡

3층 78.73㎡

3층 70㎡

